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10. 10. 25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조례안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“부위원장 2” 를 “부위원장 1” 로 함. (조례 제3조제1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
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부위원장 2” 를 “부위원장 1” 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 4급이상 공무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명 과 부위원장 2명-- 포함된 15명 ----- -----.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호선하며, 위원은 구청장이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, 환경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.</p> <p>③ ----- 하며, 한 차례만 ---- -----.</p> <p>④ ----- 규정에도 불구하고 ----- ----- 새로 위촉된 위원 -----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-----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 <p>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----- -----부위원장 1명 ----- -----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